

## ●병무청고시제2018-1호

20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9년도 인원배정 고시

20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9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병무청장

###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 및 제36조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72조부터 제78조의2까지

### 2. 주요방침

가. '19년도 인력지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계	16,500	2,500	13,000	1,000
현역병 입영대상자	7,500	2,500	4,000	1,000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9,000	-	9,000	-

- ※ 전문연구요원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 산업기능요원의 보충역은 배정인원(9,000명) 초과 시에도 모두 편입 가능
- ※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만 배정

나. '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19년도 인원배정 주요 방침

#### 【전문연구요원】

##### ○ '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 '19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19년 상반기 추가 선정
- 선정 기준
  - 자연계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선정 가능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 기타 자연계 연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설연구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방위산업·정부출연·국공립 연구기관과 중소기업부 주관 기술혁신대전수상·R&D성과분석 우수·계약학과참여 업체의 연구소는 선정기준 충족 시 선정 우대

○ '19년도 인원배정

- '19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 인원배정 제한 대상 : 지방청 복무관리 불합격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규정」 제19조의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
- 인원배정을 신청한 업체(중소기업 제외)가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한 경우 1명 이상 배정
- 중소기업은 업체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 총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
- 중견기업은 편입률, 평가결과 등 반영 업체별 배정(대기업은 인원배정에서 제외)
- 방위산업연구기관은 국가정책 반영 우대배정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 600명
  - \*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배정인원은 병역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인원을 의미함
- 기타 연구기관(특정연구, 정부출연, 국공립 등)은 업체 평가결과 등 반영 차등 배정
- 사회복지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보며,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하지 않은 업체도 편입 가능
- ※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인원배정 받으려는 업체는 '19년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해야 함 (단, '18년 상반기 신규 선정된 업체는 기 신청한 필요인원으로 같음)

【산업기능요원】

○ '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 '19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선정 기준
  - 공업 분야는 공장 및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제조·매출실적이 있고,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광업 분야는 광물(석탄은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 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 건설업 분야는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 수산업 분야는 어선(임차선박 포함)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 해운업 분야는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 방위산업체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규모의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및 고용노동부 공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선정제외('18년 신설)

○ '19년도 인원배정

- '19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 결과 우수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
- 방위산업체 및 농어업 분야는 별도 배정
  - 방위산업체는 기간산업체(중소기업) 인원배정 기준 적용
  - 농어업분야는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배정
- 기간산업체의 경우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 다만, '19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반납되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회수된 배정 인원은 인원배정 우선순위 관계없이 별도 재배정(10월경)
  -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배정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화고 졸업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li> <li>- 일·학습병행제 참여자</li> <li>- 도제식교육 참여자</li> </ul> </li> <li>○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화고 졸업자 (1순위 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순위 외</li> </ul>

-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 \* 2000년 출생자('19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2000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18년 졸업이후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1, 2순위 배정 후 잔여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19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 제외)·마이스터고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선취업 후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 정보처리분야 배정자는 관련 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1·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지방청 복무관리 및 추천권자 평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배정

**【승선근무예비역】**

○ '19년도 인원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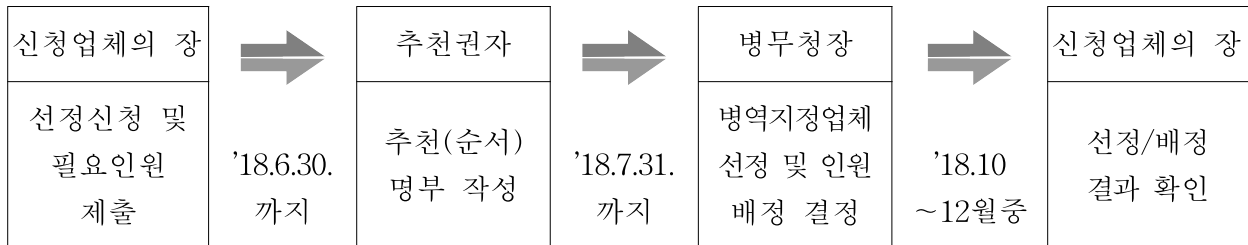
○ 대상업체

해운업체	수산업체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 배정기준

- 인원배정을 받으려는 업체는 필요인원을 '18년 6월말까지 추천권자에게 신청해야 함.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국가필수 국제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 우선 인원배정
  - 평가결과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 신규로 필요인원을 신청한 업체 중 '18년에 직무상 사망(실종)자 발생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승선근무 가능선박 수 등 업체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및 복무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인원배정
  -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직무상 사망(실종)자 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 전년도 배정인원 미 편입업체는 인원배정 일부 제한 등
-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업체에 한하여 인원배정
  -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가능
- 반납되거나 이동근무 등으로 회수된 배정인원은 복무관리 실태 등 고려 재배정(4월, 6월, 9월, 11월)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19년 필요인원 신청업체 또는 지방병무청 관리업체에 한함.

3.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4.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기관

가. 전문연구요원(자연계 연구기관)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학	대학원	교육부장관	
	대학부설		
	기초과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역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공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공법인	정부출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특정기관		
	공익법인		
	공공기관		
	의료연구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분야별	업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요업 정보처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협회, 한국화장품협회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공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운·수산	해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광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에너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건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해운·수산분야는 보충역만 인원배정

다. 승선근무예비역(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기관
해운·수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 5. 유의사항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인력지원 규모와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되거나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님

- 우선 인원배정 대상이라도 전체 인력지원 규모에 따른 업체별 배정 상한인원 범위를 초과하거나 업체가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되는 경우 인원배정이 안될 수 있음
-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공장만 선정되므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을 신청해야 함

6. 향후 추진일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18. 6. 1~ 6. 30.(접수부처·기관 별도공지)
-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실태조사 : '18년 9 ~ 10월  
(단, 산업기능요원 1차 선정제외 업체는 실태조사 전 사전 공지)
-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 공지 : '18년 10 ~ 11월
  - 전문연구요원 : 10월
  - 산업기능요원 : 11월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18년 11 ~ 12월
  - 전문연구요원 : 11 ~ 12월
  -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 12월